

제 930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

□ 안 건 명 : 신내3지구 4,5,6단지 도시형 생활주택
전기·정보통신 설계용역

□ 심 사 일 : 2013. 10. 10.

□ 사업개요

○ 용역비 : 138,280천원

○ 용역기간 : 2013.11 ~ 2014.10

○ 과업규모 : 신내 3지구 4, 5, 6단지 전기·정보통신분야의 설계실시

□ 심사결과 : 적정(조건부)

심 사 항 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□ 대상 ■ 미대상	○ 서울시 주요정책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전기, 통신분야 설계용역으로 전력기술관리법, 통신관련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설계업체에 용역 시행 필요성이 인정됨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○ 용역비: 127,650천원(감10,630천원) - 공공주택 설계도서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기본설계 미 시행에 따른 할증요율 감적용(1.3-->1.2)
3. 기타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	○ 과업내용과 범위에 맞게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람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지연·중단 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 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○ 통합발주에 따른 전기, 통신, 전기소방 규정의 적정성 - 각 분야별 관련규정에 저촉여부 - 통합 공사비 설계요율 적용의 적합성 ※ 용역발주전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리스크관리 대책 ○ 유사·동일 공정 설계용역 수행에 따른 설계요율의 적정성 - 귀 공사의 전기, 통신 등 축적된 자료 활용방안 ○ 개략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- 현실적으로 수배전반, 발전기, 태양광 등 단품 고가 자재로 설계 실행을 감안할 경우 설계의 난이도가 복잡하지 않은 단품 고가 자재비 적용방안

<첨 부>

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

확 인 항 목	세 부 내 용
용역시스템	1.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 (첨부)등록 ○ <u>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</u> 및 <u>과업내용서</u> 를 <u>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이 필요하니 결과 통보</u>
입찰전	2.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- 심의절차 이행 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○ <u>발주부서</u> 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<u>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</u> - 단, <u>서울시</u> 항목별 세부 평가 <u>기준과</u> 모든사항이 <u>동일한 경우</u> 에는 <u>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</u>
심사 및 심의전 확인	3. 유관부서 의견수렴 -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○ 기술용역타당성 <u>심사</u> 및 건설기술 <u>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</u> 및 <u>관련(유관)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</u> - <u>사업계획 수립시</u> 계획부서, 공사부서,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·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-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※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('13.5.22) : <u>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작성</u>
타당성 조사용역	4.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○ <u>재원조달방안</u> 및 사업의 <u>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</u> -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
용역준공시	5.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 철저 -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- 정보소통광장 등록 철저이행 ○ <u>발주부서</u> 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(http://www.gov20.seoul.go.kr)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- <u>용역보고서</u> :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(<u>준공시</u>) - <u>전체성과품</u> :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(<u>준공시</u>) · 서울도서관 디지털성과품 표준포맷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 ※ 시장방침 제135호('13.5.24) : <u>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</u>
설계시	6.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- 지장물 확인철저 -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○ <u>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</u> 는 우리시 통합 공간정보서비스 (http://98.33.0.64/gis/index)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- 아울러 지반조사,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
내진	7.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여부 ○ 모든 공공건축물(규모관계 없이)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수문, 교량·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※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(구조기술사)